

토지출입(일시사용)증

소 속

직 명

성 명

유효기간 부터 까지

사 진
(2.5cm × 2cm)

위 사람은 「골재채취법」 제47조제5항에 따라 토지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측량을 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국토교통부장관·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[인]